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997. 12. 29.

도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7년 11월 24일 영등포구청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1997년 12월 3일 회부

다. 상 정 일 자 : 1997년 12월 23일 제53회 정기회 제12차 도시건설위원회

(’97. 12. 22)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도시정비국장 이종현)

가. 개정이유

- 자동차 등록이 증가함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여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민원이 매일 반복되어 단속 공무원의 근무가 어려워 격무에 따른 직원에게 사기양양을 위하여 단속공무원에게 실적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 기 제정 시행중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에 실적금(포상금)지급에 따른 조항 개정으로 지급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 단속공무원에 대한 실적 포상금(제4조 1항 7호) 신설

나. 주요골자

- 단속공무원에 대한 실적 포상금(제4조 1항 7호) 신설 기타 단속공무원에 대한 실적 포상금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유제한)

본 안건의 개정이유는 부족한 주차장으로 인하여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을 단속하여 주차질서를 확립함에 있어 단속 공무원의 격무가 심대하므로 직원의 사기양양을 위하여 공무원에게 실적금 포상을 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여 지급의 근거를 만들고자 하는 안으로서 포상금의 실적이 최우수한 자에게만 지급되어져야 하나 일률적으로 단속원 전원에게 월 정액과 같이 지급되는 것은 재고되어져야 할 것이며 이는 단속실적에 적응하는 차등지급되어야 하며, 끝으로 공익요원이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는데 공익요원은 업무보조로만이 할 수 있으나 단속업무까지 하고 있는 것은 실정법에 맞지 않는다고 사료됨.

4. 심사결과 : 원안의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증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55
----------	-----

제출년월일 : 1997. 11. 24.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개정이유

- 자동차 등록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그에 따른 불법 주·정차 차량도 줄지 않고 늘어나고 있어 지속적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여 주차질서를 확립코자 하고 있으며,
- 단속의 불가피성에 대한 이해 부족 등에 기인된 많은 민원이 매일 계속 반복되어 단속 관련 공무원의 근무가 어려워 격무에 따른 관련 직원에게 사기양양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와 구 방침에 의거 단속공무원에 대한 실적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 이를 기 제정 시행중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에 실적금(포상금) 지급에 따른 조항 개정으로 지급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단속 공무원에 대한 실적 포상금 (제4조 2항 7호) 신설
“ 기타 단속 공무원에 대한 실적 포상금 ”

3. 참고사항

- 가. 관련지침 : 서울특별시 주차 제63310 - 1338 ('93. 11. 9)호 및 구방침 제982('95. 8. 21)호
- 나. 협의사항 : 없음.
- 다. 예산조치 : '98 예산편성 (82,200천원)
- 라. 조례개정(안) : 별첨

첨 부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증개정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증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7. 기타 단속 공무원에 대한 실적 포상금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세출)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설치 관리 및 운영비 2.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의 보조 3. 노외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 4.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 5. 서울특별시 정차·주차 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대행 비용 6.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한 재원의 적립 <p>< 신 설 ></p>	<p>제4조(세출)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6. (현행과 같음) 7. 기타 단속 공무원에 대한 실적 포상금